

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3]

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
(제22조제2항관련)

지 원 종 류	대 상 자	지 원 금
이 주 정 착 특별지원금	2003년 10월 30일부터 계약체결일 등 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 거주하고 있 는 다음 각호의 자 1.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2.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 주하는 세입자	지원금 : 세대당 1천5백만 원
생 활 안 정 특별지원금	이주정착특별지원금의 대상자와 동일	지원금 : 1인당 250만원. 다만,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비 고 : 대상자의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질병으로 인한 요양, 징집으로 인한
입영, 공무,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
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며, 계약체결일 등 전
에 상속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현 거주자는 전 거주자의
거주시점 부터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.